2024년도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모집 요강
교원 연수 유학생

일본 문부과학성은, 각국의 교원이며, 소정의 일본 대학에서 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외국인 유학생(교원 연수 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아 래

1.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문부과학성은, 일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본과 자국의 가교가 되고, 양국 나아가 세계 발전에 공헌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아래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1)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일 것. 신청 시 일본 국적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 시 일본 이외에 생활 거점을 둔 일본 국적 소지 이중 국적자에 한해 일본 입국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일본 국적을 이탈할 예정인 자는 대상으로 한다. 제1차 선발은 응모자가 선택한 국적국 소재의 재외 공관에서 실시한다.

(2) 연령

원칙적으로 1989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 예외는 국적국의 제도・사정(병역 의무・전란에 의한 교육 기회의 상실 등)에 의해 자격 연령 시기에 응모하지 못한 자라고 문부과학성이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개인적인 사정(경제 상황, 가족 사정, 건강 상태, 대학 또는 근무처의 사정 등)은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3) 학력·직력 등

대학 또는 교원 양성 학교를 졸업한 자로, 자국의 초・중등 교육 기관의 현직 교원 및 교원 양성 학교 (대학 제외) 의 현직 교원으로서, 원칙적으로 2024년 10월 1일 기준 통산 5년 이상의 교육 경험이 있는 자. 단, 현직 고등 교육 기관의 교원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4) 일본어 등

적극적으로 일본어 등을 학습하려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일본 입국 후에도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의욕이 있을 것. 또한 일본에서 연구에 종사하며, 생활에 적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5) 건강

소정의 건강 진단서 양식에 따라, 일본 유학과 관련해 심신 모두 지장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6) 출발 시기

원칙적으로, 연수 코스 시작 2주 전부터 코스 개시일 사이에 수용 대학이 지정하는 날짜(원칙적으로 9월 또는 10월)에 일본 입국이 가능한 자. 본인 사정으로 소정의 기일 이외에 입국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문부과학성이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부과학성 또는 수용 대학이 지정한 날짜의 최종일까지 일본 입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을 사퇴할 것.

(7) 비자 취득

일본 입국 전에 원칙적으로 주한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유학' 비자를 신규로 취득하고, 신규 취득한 '유학'의 재류 자격으로 입국할 것. 따라서 이미 다른 재류 자격('영주자', '정주자'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학' 사증을 신규로 취득하여 일본에 입국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비 외국인 유학생 신분이 종료된 후 다시 '영주자', 또는 '정주자' 재류 자격을 신청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 새로 '유학'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일본에 입국한 경우는 장학금 지급이 중지가 되니 주의할 것.
또한, 일본정부에서 결핵 검사를 실시하는 국가가 있으므로 사증 취득 시 반드시 국적국 소재의 재외공관의 지시에 따를 것.

(8) 대상 외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대상 외로 한다. 채용 이후 판명된 경우에는 사퇴할 것.

① 현역 군인 또는 군속의 자격을 가진 자.
② 문부과학성 또는 수용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자.
③ 과거에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일본 입국 후 사퇴한 자도 포함). 다만, 문부과학성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유학생 수용 촉진 프로그램 (Monbukagakusho Honors Scholarship for Privately-Financed International Students))는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음.
④ 일본 정부(문부과학성)의 장학 제도 중 별도의 2024년도 장학금 지급 개시 프로그램에 중복으로 신청한 자.
⑤ 신청 시 이미 '유학'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의 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자 또는 자국에서 본 장학금 신청 시부터 장학금 지급 개시 전까지 사비 외국인 유학생으로 일본의 대학 등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자. 단, 현재 일본의 대학 등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사비 외국인 유학생이라도 신청 시점에 장학금 지급 개시 전에 수료하여 귀국할 것이 확실하며, 새로 '유학'의 재류 자격을 취득해 일본으로 입국하는 자는 제외한다.
⑥ 장학금 지급 개시 이후에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 기관을 포함)으로부터 장학금을 수급할 예정인 자.
⑦ 신청 당시 이중 국적자로 일본 입국 시(수용 대학에서 학적 등 발생 시)까지 일본 국적 이탈을 증명할 수 없는 자.
⑧ 제 1차 전형 필기시험에서 시험감독원이 금지한 부정행위를 시도하거나 실제 한 것으로 판명된 자
⑨ 일본 입국 후 '유학' 이외의 재류 자격으로 변경한 자.

(9) 장학금 지급 종료 후 귀국·복직

장학금 지급이 종료되는 달의 월말까지 귀국하여, 자국의 초등, 중등 교육 기관의 교원 또는 교원 양성 학교의 교원으로 복직할 것이 확실한 자. 귀국 후에는 학교 교육에 관한 일본에서의 연구 성과를 활용할 것. 이 귀국·복직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장학금의 전액 환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종료 후 귀국·복직이 불확실한 자는 지원하지 말 것.

(10) 기타

일본 유학 중 일본의 국제화에 이바지하는 인재로서 널리 지역의 학교와 지역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자국과 일본과의 상호 이해에 공헌하는 동시에, 수료 후에도 유학한 대학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수료 후의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한국에 귀국 후에는 재외 공관 등이 실시하는 각 사업에 협력함으로써 자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할 의사가 있는 자를 채용한다.

2. 대학 배치 및 대학에서의 전문 연수

(1) 연수는 『교원 연수 유학생 코스 가이드』에 기재되어 있는 대학의 연수 코스에서 실시한다.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또는 재외 공관에서 열람 가능)

(2) 수용 대학은 문부과학성이 후보자의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어학 능력, 필기시험 결과 및 전문 연수 희망 등을 감안하여, 대학과 협의해 결정한다. 또한 본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소정의 기간 내(2024년 8월 중순까지)에 수용 대학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채용하지 않는다.

(3) 대학에서의 연수는 원칙적으로, 일본어 또는 영어로 진행된다. 각 코스의 사용 언어는 코스 가이드에서 확인 할 것.

(4) 일본어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은, 배치된 대학 또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대학의 일본어 연수 코스에서 일본어 교육을 받는다. 일본어 교육 기간은 최초 6개월이지만, 수용 대학에 따라서는 연수와 병행하여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5) 연수는 주로 교육 경영(예: 교육 행정, 학교 경영), 교육 방법(예: 교수・학습 시스템론, 교육 과정・교육 평가), 전문 교과 연구(예: 수학, 물리, 화학, 체육) 및 견학 실습(예: 수업 참관, 특별 교육 활동 참가, 교육 연구 시설 견학)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연수 내용은 대학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코스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것.

(6) 수용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 증서가 부여된다. 단, 이 제도는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연수 코스 수료 후에는 장학금 지급이 종료되는 달의 월말까지 귀국하여 자국의 초등, 중등 교육 기관의 교원 또는 교원 양성 학교의 교원으로서 복직해야 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도중 또는, 수료 직후에 일본에서 대학원의 석사·박사 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이 귀국·복직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급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장학금의 전액 환수를 명할 수 있다.

3. 장학금 지급 기간

2024년 10월(또는 연수코스 시작하는 달)부터 2026년 3월까지의 기간 내에 각 대학의 연수 과정 수료에 필요한 기간. 일본 입국 시기가 2024년 9월 인 경우에도 장학금 지급 개시월은 2024년 10월로 한다.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장학금 등

(1) 장학금

일본 입국 후 월 143,000엔을 지급한다. 특정 지역에서 수학·연구하는 자에게는 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 단위로 가산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각 연도별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2) 교육비

대학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 검정료는 문부과학성이 부담한다.

(3) 여비

①일본 입국 여비

문부과학성은 상기「1. (6) 출발시기」에 지정한 소정의 기간 중에 도일하는 유학생에게 여행 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항공권을 교부한다. 항공권은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원칙적으로 국적국 내)에서 수용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이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으로 한다. 교부 후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국내 여비, 공항세, 공항 사용료, 도항에 필요한 특별세, 일본 국내의 여비(항공기의 환승 비용을 포함), 여행 보험료, 휴대품·별송 수하물 관련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국적국에 재외 공관이 소재하지 않아 비자 신청을 위해 제3국에 들러 일본에 입국하는 자나 국적국에서 일본으로의 직항편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경유국 국내의 여비, 숙박비 등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국적국에서 경유국까지의 항공권 및 경유국에서 수용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만을 문부과학성이 교부한다.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하되, 일본 입국 전 한국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신청서의「일본 입국 전 주소」란에 기재한 주소를 「거주지」로 인정하며, 가까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준비한다. 또한, 비자 신청을 위한 제3국 경유를 제외하고, 개인 사정으로 국적국 이외의 국가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항공권을 교부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의 사정에 의해 상기「1. (6) 출발 시기」에 지정한 소정의 기간 이외에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도 입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귀국 여비

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연수 코스를 수료하고 상기 「3. 장학금 지급 기간」에 정해진 장학금 지급이 종료되는 달의 월말까지 귀국하는 유학생에 대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항공권을 지급한다. 항공권은 수용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에서 해당 유학생의 도착지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원칙적으로 국적국 내)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교부 후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귀국하는 유학생의 일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공항세, 공항 사용료, 도항에 필요한 특별세, 국적국 내의 여비(항공기 환승 비용을 포함), 여행 보험료, 휴대품·별송 수하물 관련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본인 사정 및 아래의 「5. 장학금 지급 중지 사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달 이전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장학금 지급이 종료되는 달의 월말까지 귀국하지 않거나 그 달 내에 귀국했더라도 자국의 초등, 중등 교육 기관의 교원 또는 교원 양성 학교의 교원으로 복직하지 않을 경우 귀국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5. 장학금 지급 중지 사항

다음의 경우 문부과학성에서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액의 환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① 신청서류에 허위・부정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②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서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
③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여,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형에 처해졌을 때.
④ 대학의 학칙 등에 준거한 징계 처분으로서 퇴학·정학·훈고 및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혹은 제적되었을 때.
⑤ 대학의 학업 성적 불량이나 정학, 휴학 등에 의해 수용 대학의 연수 코스 수료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⑥ 「유학」의 재류자격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하였을 때, 또는 「유학」의 재류 자격을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했을 때.
⑦ 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 특정되어 있는 것 제외)을 지급 받았을 때.
⑧ 장학금 지급이 종료되는 달의 월말까지 귀국하여 소속되어 있던 자국의 초등, 중등 교육 기관의 교원 또는 교원 양성 학교의 교원으로 복직하지 않았을 때.

6. 선발

(1) 재외 공관은 제1차 전형으로서 서류 심사, 필기시험(일본어·영어)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2) 제1차 전형의 결과 통보는 재외 공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짜로 하고, 합격, 불합격의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일정의 일본어 능력 보유는 합격 요건의 하나가 된다.)또한, 제1차 전형에 합격한 자가 반드시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다.

(3) 제1차 선고 합격자는 재외 공관이 문부과학성에 추천한다. 문부과학성은 재외 공관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제2차 선고를 실시, 제2차 선고 합격자를 선정한다.

(4) 최종 선발 결과는 재외 공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짜에 통보한다. 선발된 자에게는 수용 대학도 함께 통지한다. 수용 대학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정의 기간 내(2024년 8월 15일까지)에 수용 대학이 결정하지 않을 경우 채용하지 않는다..

7. 신청 서류

응모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재외 공관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한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No.	서류 종류	원본 1부	사본 1부	비고
①	신청서	○	○	2024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 (주4)
②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	○		2024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 (주5)
③	최종 출신 학교의 전 학년 성적 증명서	○	○	출신 학교 또는 해당 국가 정부가 발행한 것.
④	최종 출신 학교의 졸업 증명서 또는 학위 취득 증명서	○	○	(주 6). (주 7).
⑤	재직 증명서	○	○	근무처가 발행한 것. (주 8).
⑥	현재 근무처 상사의 추천장	○	○	양식은 자유. (샘플 양식 있음.) (주 8).
⑦	건강 진단서	○	○	2024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 (주 9).
⑧	일본어 능력 자격 증명서		●	일본어 능력에 관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사본을 제출할 것. (주10) *⑧ 만 사본 2부.

(주1) ○의 서류는 필수제출. ●의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할 것.
(주2) 모든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다른 언어로 된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할 것
(주3) 모든 서류의 각 첫 장 우측 상단에는 반드시 ① ~ ⑧까지의 신청 서류 번호 (상기표의 No. 참조)를 기재할 것.
(주4)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해 선명한 화질로 **사진 전용 용지**에 인쇄한 것으로 하고, 크기는 4.5×3.5㎝, 상반신·정면·탈모할 것. 또한, 사진의 뒷면에 국적 및 이름을 기입할 것. 신청서 데이터 파일에 디지털 화상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인쇄하는 것은 가능.
(주5) 『교원 연수 유학생 코스 가이드』(문부과학성 홈페이지 또는 재외 공관에서 열람 가능)에서 희망 대학을 선택하여, 코스 코드 및 희망 분야와 같이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에 기입한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20. 일본에서의 연구 계획」과 관련된 코스를 선택할 것. 관련 없는 코스를 선택할 경우, 대학에서 수락을 받지 못해 일본 유학을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주6) 최종 출신 대학의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취득 증명서는, 졸업 증서 또는 학위증의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원본은 제출하지 말 것). 단, 이 경우에는 해당 출신 대학 책임자의 확인 증명을 첨부할 것.
(주7) 최종 출신 학교의 성적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가 하나로 된 증명서의 경우는, 형광펜 등으로 졸업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표시할 것.
(주8) 해당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종료 후 귀국·복직이 조건이므로 소속 기관 상사와 귀국 후 계획을 신청 단계부터 협의할 것.
(주9) 건강 진단서 제출 후 건강 상태에 변화(라이프 플랜과 관련된 중대한 변화 포함)가 생긴 경우, 수용 대학 및 일본 의료 기관의 수용 체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재외 공관과 정보를 공유할 것.
(주10) 신청자의 이름 및 해당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레벨, 점수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서 「22. 일본어

능력(자격)」란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증명서를 제출할 것.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인쇄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이름 및 해당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레벨, 점수 등)이 포함된 페이지를 인쇄하여 제출할 것. 증명서는 대사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만 인정함.

8.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해 채용 통보 전후 언제라도 입국 일정의 변경, 장학금의 취소, 또는 본 모집 요강의 기재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문부과학성 또는 외무성(재외 공관을 포함)의 합리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는 사유로서, 천재지변, 정부(지방 정부를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동일) 또는 정부 기관의 행위(감염증에 관한 일본 정부 또는 각국 정부의 출입국 제한, 입국 제한 등의 국경 방역 대책을 포함), 법률, 규제 또는 명령의 준수, 화재, 폭풍우, 홍수 또는 지진, 전쟁(선전 포고의 유무와 상관 없음), 반란, 혁명 또는 폭동 또는 파업 또는 폐쇄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9. 주의 사항

(1) 일본 입국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습관, 일본과 모국 간 법 제도의 차이, 대학의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일본 입국 후, 장학금 수급까지 한 달~한 달 반 정도 소요되므로, 당장에 필요한 생활 자금으로 최소 미화 약 2000달러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장학금은 입국 후에 각자가 개설한 우체국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이 계좌 이외의 계좌로는 장학금을 송금하지 않는다.

(4) 건강 진단서 취득 등을 통해 결핵 등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일본 입국 전까지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일본 입국 전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 일본 입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일본 입국 후, 본인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6) 일본 입국 후, 마이넘버(사회보장번호)카드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숙소에 대하여

① 대학의 유학생 숙소

유학생을 위한 전용 숙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자는 원할 경우 일정 조건하에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입실자 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희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숙소에 관한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연수 코스에 따라서는 일본 입국 전에 숙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코스 가이드에서 확인할 것.

② 민간 숙소 등

상기 숙소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일반 기숙사나 민간 숙소에 본인 부담으로 입주하게 된다. 부양가족(배우자·자녀)을 대동하는 경우, 가족용 숙소의 확보가 매우 어려우므로 피채용자가 도일 후 숙소를 확보한 다음 부양가족을 데려올 것.

(8) 동반 가족에 대해

동반자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채용자의 부담이며, 가족용 숙소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고 고비용이 든다는 점을 미리 숙지할 것. 따라서 채용자는 먼저 단신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적당한 숙소를 마련한 후 가족을 데려올 것.

(9) 채용된 경우, 채용자에 관한 정보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배치 대학·연구과·학부, 전공 분야, 재적 기간, 수료 후의 진로,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를,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유학생 사업 (유학 중의 지원, 팔로우업, 유학생 제도의 개선)에 이용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 기관과 공유한다.

또한, 채용자에 관한 정보(생년월일 및 연락처 이외)는 일본 정부가 작성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용 촉진을 위한 홍보 자료 등에, 특히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비 유학생 경험자를 소개하기 위해 공표하는 경우가 있다.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채용이 결정된 때에 제출해야 하는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의 준수 사항을 정한 서약서'에 이러한 취급 방침에 대해 동의를 구한다. 본 취급에 대해 승낙하는 자를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용한다.

(10) 일본 상륙을 위한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는다.

(11) 모집 요강, 신청 서류에 병기된 영문은 편의상 사용한 것으로, 영문 표현이 일본어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12) 이 모집 요강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나 그 외의 의문점이 있으면 재외 공관에 문의하여 그 지시에 따를 것.

(13) 본 모집 요강에 정해진 것 이외의 국비 외국인 유학생 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일본 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주의 : 대한민국 응모자의 경우 반드시 [별첨 2] 2024 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모집 절차 및 선발 일정(교원연수생)에 대한 안내를 확인 후 응모신청 할 것. 또한, 모집요강의 경우 일본어 요강을 기준으로 함.**